

의안 번호	제3533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4년 10월 31일 김포시장
- 나. 상 정 일 자 : 2024년 11월 4일
- 다. 의 결 일 자 : 2024년 11월 4일

2. 제안이유

-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일과 휴식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 다음 재직기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
-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준비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개정하며
-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장기재직공무원이 각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가 남아 있는 경우 다음 재직기간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(안 제12조4항)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 및 법 제66조의2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에게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함(안 제12조제7항)

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의 휴가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개정하고,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개정함(안 별표 3)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재직기간별 휴가를 여건상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휴가를 사용토록 하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,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자에게 60일 이내의 퇴직준비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퇴직 후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며
-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저출산 사회기조의 변경에 대응하여 출산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현재의 생활관습에 맞춰 휴가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※ 별첨자료

○ 지방공무원법

제66조(정년)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제66조의2(명예퇴직 등)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(勤續)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(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○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[별표 1]

경조사 휴가일수표 (제7조의7제2항 관련)

구분	대 상	일수
결혼	본인	5일
	자녀	1일
출산	배우자	10일 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)
입양	본인	20일
사망	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	3일

비 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○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

제12조 (특별휴가) ④ 의장은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. 다만,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1.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: 10일
2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5일
3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20일
4. 재직기간 30년 이상 : 10일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10. 주문사항 : 생략
11. 결과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